

兪吉濬의 立憲君主制論

—未定稿 〈政治學〉을 중심으로—

尹 炳 喜

- | | |
|---------------|-----------|
| I. 머리말 | (2) 貴族權 |
| II. 〈政治學〉의 성격 | (3) 民 權 |
| III. 立憲君主制論 | 2. 地方自治制論 |
| 1. 國權論 | IV. 맺음말 |
| (1) 君主權 | |

I. 머리말

兪吉濬(1856~1914)은 開化期에 많은 저작물을 낸 개화사상가이며 또한 甲午改革 등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개혁을 주도해 온 정치가이기도 하다.

근대 개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兪吉濬에 대한 연구도 따라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¹⁾ 이 가운데는 특히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꼽

1) 李光麟, “美國留學時節의 兪吉濬”, 『新東亞』 1968. 2, (『改正版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4 所收).

金泳鎬, “兪吉濬의 開化思想”, 『創作과 批評』 1968. 11.

姜在彥, “開化派における自由民權思想의 形成”, 『近世朝鮮의 變革思想』, 日本評論社, 1973.

姜萬吉, “兪吉濬의 韓半島中立化論”, 『創作과 批評』, 1973 겨울호.

金柄夏, “兪吉濬의 經濟思想”, 『東洋學』 4, 1974.

金容燮, “甲申·甲午改革期 開化派의 農業論”, 『東方學志』 15, 1974.

田鳳德, “西遊見聞과 兪吉濬의 法律思想”, 『學術院論文集』 15, 1976.

李光麟, “兪吉濬의 開化思想—〈西遊見聞〉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75·76合輯, 1977(『韓國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79 所收).

하고 있는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그의 개화사상·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兪吉濬이 지향한 가장 이상적인 정체가 英國의 立憲君主制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아울러 그 성격 등에 관해서도 많은 것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異見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새롭게 밝혀져야 할 미진한 부분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별반 이용되지 않았던 그의 未定稿 <政治學>을 중심으로 그가 지니고 있던 입헌군주제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가 兪吉濬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II. <政治學>의 성격

兪吉濬의 未定稿 <政治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政治學>이란 과연 어떠한 책인가를 알기 위해서 몇가지 문제를 대략적이

禹男淑, “兪吉濬의 政治思想”, 梨大碩士論文, 1982.

金鳳烈, “兪吉濬의 開化思想—農村經濟安定과 國家財政確立方案을 中心으로—”, 『慶熙史學』 11, 1983.

崔丙植, “兪吉濬의 文明社會論과 啓蒙思想”, 精神文化研究院碩士論文, 1985

金鳳烈, “兪吉濬의 國權論”, 『慶熙史學』 12·13合輯, 1986.

李光麟, “日本亡命시절의 兪吉濬”, 『新東亞』 1986. 10.

林承豹, “兪吉濬과 鄭觀應의 政治觀 比較—<西遊見聞>과 <易言>, <成世危言>을 中心으로—”, 『弘益史學』 3, 1986.

柳永益, “甲午更張 이전의 兪吉濬—1894년 親日改革派로서의 등장배경을 중심으로—”, 『翰林大 論文集』 4, 1986.

兪東濬, 『兪吉濬傳』—潮閣, 1987.

- 2) 유길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첫째 그가 급진개화파인가 온건개화파인가, 둘째 절대적 군주권의 확보를 강조하였는가 아니면 민권의 확립을 추구하였는가, 셋째 그가 이상으로 표방한 英國의 立憲君主制를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는가 아니면 단지 그것은 이상형일 뿐 실제로는 절대군주제체를 지향하였는가 하는 것들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나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듯싶다.

〈政治學〉은 「俞吉濬全書」 속에俞吉濬의 필사본 그대로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序文 등과 같은 것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뒷 부분이 散失된 채 실려있다.

이 밖에 〈政治學〉의 내용 일부가 「萬歲報」 1907년 3월 7일자의 1면에 게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신문 1면의 쏘 7段 중에서 거의 3段을 차지할 만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政治學〉의 第1編 第1章의 第1節과 第2節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³⁾ 그러나 이 글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말미에 (未完)이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은 아마 연재물로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 한 번의 게재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政治學〉의 성격을 규명하여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俞吉濬의 다른 著作物들과 관련지어 추측하여 보고자 할 뿐이다.

먼저 규명할만한 문제는 〈政治學〉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俞吉濬의 著作物인가 하는 것이다.

〈政治學〉의 내용을 훑어보다 보면 시실리의 立憲君主制를 설명한 뒤에 바로

譯者曰 施實利國은 今에 伊太利國의 一部라 獨立國 아니로되 尙其憲法을 此에 論述호는 所以는 法國이 十八世紀의 際 伊太利國 獨立호기 前에 在호야 獨立國家로 憲法을 發布호을 因호이라.⁴⁾

고 하여 번역자의 의견을 註記하여 놓은 부분이 한군데 눈에 띈다. 여기서 譯者란 아마도俞吉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책

3) 〈政治學〉의 p.1~p.15까지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p.4의 7번째 줄의 '生活' 이후부터 p.11의 5번째의 '濬己' 앞까지 7페이지 정도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내용의 일부를 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것 같다.

4) 〈政治學〉, 「俞吉濬全書」(以下「全書」) IV, p.622.

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유길준의 번역서인 것이 틀림없다.⁵⁾

그러면 <政治學>은 어떤 책을 그 源流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政治學>이 西歐學者들의 政治·社會理論 및 여러 나라의 政治形態 등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는 日本에 관한 언급이 간혹 섞여나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책의 原本은 日本人의 著述일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兪吉濬은 이 밖에도 몇 개의 번역물을 남겨 놓고 있다. 즉 「全書」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普魯士國厚禮斗益大王의 七年戰史>, <英法露土諸國의 哥利米亞戰史>, <波蘭衰亡戰史>, <伊太利獨立戰史> 등이다. 이 중에서 <普魯士國厚禮斗益大王의 七年戰史>는 1896년에 澁江 保가 著述한 책을 번역한 것이며 <英法露土諸國의 哥利米亞戰史>는 1895년에 발간된 松井廣吉의 책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⁶⁾ <波蘭衰亡戰史>와 <伊太利獨立戰史>도 1895년에 澁江 保와 松井廣吉이 著述한 책을 각각 번역한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⁷⁾ 이처럼 兪吉濬이 번역한 대부분의 책들이 日書를 그 대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하여 볼 때 <政治學>도 마찬가지로 日本책을 그 원류로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면 <政治學>은 유길준이 언제 번역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근거를 갖고있지 못하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政治學>의 처음 부분이 「萬歲報」 1907년 3월 7

5) 譯者が 유길준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政治學>이 西洋의 책을 번역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 경우의 <政治學>은 유길준이 重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 1975, pp. 255~264.

7) 1907년 5월에 발간된 金德均의 「意大利獨立史」는 松井廣吉의 책을, 1899년과 1906년에 두차례 간행된 魚瑯善의 「波蘭末年戰史」는 澁江保의 책을 源流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길준의 번역서들은 이 책들과 대동소이하다(「同上書」, pp. 196~236 참조).

일자에 게재된 적이 있으므로 그 以前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유길준은 1894년 甲午改革 당시에 내각에 참여하여 핵심인물로서 내정개혁을 주도하였으나 아관파천을 계기로 정국이 일변함으로서 日本으로 亡命하게 된다. 그의 일본망명생활은 거의 11년간이나 계속되며 이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날은 1907년 8월 16일이었다.⁸⁾ 그러므로 「萬歲報」에 〈政治學〉이 게재된 시기는 유길준의 망명생활의 말년에 해당된다. 그리고 망명 직전에는 〈西遊見聞〉이 간행된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政治學〉은 유길준이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번역한 것으로서 이것을 누군가 역시 유길준이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본에서 가져와서 「萬歲報」에 실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⁹⁾

앞서 언급한 유길준의 번역서들 중에서 〈伊太利獨立戰史〉를 살펴보면 〈政治學〉과 거의 마찬가지로 남아있다. 즉 유길준의 필사본이며 그 뒷부분 등은 散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역사적 사건의 시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佛國이 一千八百七十年^{二十六}年^前 八月 二日에¹⁰⁾

라 하여 1870년이라는 연도를 쓰고 이어서 26년전이라고 註記하여 놓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1870년이라는 것은 유길준이 이 책을 번역할 당시로부터 26년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 속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한 곳이 10여군데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 책이 번역된 시기를 계산하여 보면 1896년이 된다.¹¹⁾ 다시 말하자면 〈伊太利獨立戰史〉는 유길준이 1896년중 어

8) 「皇城新聞」 1907년 5월 16일자 〈雜報〉.

9) 「萬歲報」의 사장 吳世昌, 편집인 權東鏞 등은 유길준과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서 유길준과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같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0) 「全書」Ⅲ, p. 639.

는 시기에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는 유길준이 망명한 바로 그 해이며 또한 이 책의 原本이 일본에서 출간된 직후가 된다.

이 밖에 앞서 언급한 3권의 번역서도 그 原本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출간된 것이므로 대체로 같은 시기에 번역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유길준이 일본 망명에서 돌아온지 1년도 채 못되어서 <普魯士國厚禮斗益大王의 七年戰史>는 1908년 5월에 <英法露土諸國의 哥利米亞戰史>는 同年 6월에 각각 간행될 수도 있었다고 본다.

이상에서 유길준의 번역서는 대체로 그의 일본망명생활의 산물이며 <政治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政治學>이 비록 번역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을 중심으로 그의 다른 저술 등을 참조하면서 유길준의 정치사상에 대한 일면을 살펴보아도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싶다.

Ⅲ. 立憲君主制論

<政治學>에서도 <西遊見聞>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편을 통해서 가장 理想的인 政府體制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英國의 立憲君主制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政體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즉

夫政府形式의 美惡은 歷史上 發達한 程度 及 現在 成立한 事情에 因하는 者라 其形式이 完美치 못하야도 其程度 及 事情에 適中한 者는 是 善良한 政體며 其形式은 假或整理하나 其程度 及 事情에 切中치 못할 則 善良치 못한 政體니 要한 건디 政體의 善不善이라 云호는 特一한 國家에 對하야 關係하는 用語에 不適한 則 特一한 國家를 離하야 到處皆當하게 善하다 不善하다 謂호는 政體는 無호지라 故로 政治上 自由는 文明한 人民에게 必要되야도 未開한 人民에게는 必要되지 아

11) 이와 같은 연대기록 방법을 취한 곳은 모두 12군데가 찾아진다. 이 중에서 7군데(「全書」Ⅲ, p. 591, 594, 606, 609, 623, 628, 639)는 계산하여 보면 1896년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 5군데(「全書」Ⅲ, p. 583, 585, 587, 590, 603)는 그렇지 않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길준이 예컨대 +를 -로 착각하는 등의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니 하며 立憲政體는 文明을 人民에게 適當하야도 未開을 人民에게는 適當치 아니
 하니 試看할지어라 共和制가 歐米의 文明諸國에는 能히 人民의 福祿을 保護하야
 도 南米 半開한 諸國에 在하야는 그 暴戾함과 抑壓함이 及 反寡人制 寡人制는 政治
 數가 寡少함을 謂함이니 假全貴族 아니 보다도 遠甚치 아니 할가¹²⁾
 면 政柄을 執하지 못하는 政體의 類

라고 하였듯이 좋은 政體라는 것은 그 나라의 歷史의 발전 정도와 현재의
 실정에 적합한 者라는 것이다. 예컨대 自由조차도 文明人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未開人에게는 불필요하며, 立憲政體도 文明人에게는 적당하지만
 반면에 未開人에게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共和制 역시 歐美의 文
 明國에게는 善한 政體가 될 수 있지만 南美의 半開한 나라에서는 寡人制
 보다는 오히려 못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길준이 최상의 정치체제로써
 표방하고 있는 立憲君主제도 여기에는 반드시 현 실정에 적합한 정치체제
 라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셈이다. 아울러서 어떠한 政體도 그 나라
 실정에 맞으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유길준의 政體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렇다면 立憲君主制를 실현시키는 데 알맞는 나라의 실정이란 어떤 것
 인가.

1. 國權論

俞吉濬은 <西遊見聞>에서

夫人民의 衆多함에 其才識과 德望이 足히 一國을 統御할 者가 必有한 故로 合
 衆國의 大統領을 選擇하는 法이 有하니 泰西學士中에 其法을 取用함이 可하다 하
 는 議論을 倡出하는 者가 有하니 此는 事勢에 未達하며 風俗에 甚味하야 童釋의
 戲談에도 不及할 筈더러 政府의 始初한 制度가 彼此의 殊異함이 有하니 此議論
 主倡하는 者는 帝玉政府의 罪人이라 稱하야도 其實을 難逃할디라¹⁴⁾

12) <政治學>, 「全書」Ⅳ, pp. 491~2.

13)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유길준이 共和制를 철저히 배격하였다고 보기
 는 힘들 것 같다.

14) <西遊見聞>, pp. 109~110.

고 하여 美合衆國에서는 國民들 가운데에서 能力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共和制를 실시하고 있어서 서구의 학자들 중에 共和制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린아이들의 戲談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帝王政府의 罪人됨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미국과는 처음부터 정부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共和制는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美國과 같이 애초에 君主가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에서는 共和制를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君主가 계속해서 존립하여 온 국가에 共和制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 즉 君主가 존재하여 온 국가에 가장 理想的인 정체는 立憲君主制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君主가 존재한다는 조건만 갖추어졌다고 하여 立憲君主制의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政治學>에서 美國이 共和制를 실시하게 된 경로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그 가운데

北米合衆國은 元來 英國의 殖民地됨으로써 英國憲法이 此地에 行함은 勿論이나 然나 其發達의 方向은 英國과 全異하니 蓋殖民地에는 本國갓치 封建의 貴族이 無한 則 隨亦 土地領有에 關한 封建의 特權이 無한지라 故로 平民의 精神이 夙 已隆興하야 地方自治의 發達이 漸亦 迅速하니 北米殖民地에 如此히 平民의 思想이 發揚한 際에 英國政府는 依然히 當制政體를 墨守함으로써 本國及 殖民地의 軋轢을 遂生하야 千七百七十七年에 北米十三州의 代議士가 相會하야 英國의 羈伴을 脫하고 獨立한 計를 定하야 其明年에 獨立한 榜을 宇內에 宣布하매 聯邦 同盟規約를 定하야 北米合衆國이라 指稱하고¹⁵⁾

라 하여 美國은 英國과는 달리 본래부터 封建의 貴族이 없어서 封建의 特權이 없고 대신에 平民의 精神 즉 民主思想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英國이 立憲君主制를 그대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英國의 立憲君主制와 같은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封建의 貴族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5) <政治學>, 「全書」IV, p. 654.

이상에서 立憲君主制가 실시될 수 있는 적합한 실정은 우선 그 나라에 君主와 貴族이 존재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身分制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身分制를 고수하는 것만으로 立憲君主制를 실시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第十六世紀에 社會 諸階級이 勢力 中心을 一變호는 者는 其實이 經濟上 發達力이 니 其前은 有土 貴族은 社會上의 勢力이 有호니 隨亦 政治上의 權力을 掌握호니 此世紀에 至호야 歐洲諸國의 經濟 社會가 長足の 發達을 得호야 中等 以下의 人民도 亦 巨富를 致호는 者가 不少호므로써 社會上에 其勢力을 漸得호니 政治에 參涉호져호는 希望이 隨生호야 立憲政治에 創立을 促호기에 遂호호니라¹⁶⁾

고 하여 經濟의 발달로 인하여 富를 축적한 中等 이하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남으로써 立憲政治의 創立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君主 또는 貴族들이 배타적으로 모든 정치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 점차 일반 民들이 손을 펼치게 되면서 立憲君主制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立憲君主制의 구성요소로는 君主·貴族·庶民의 3계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이 가장 훌륭한 입헌군주제의 모델로 표방한 英國의 경우를 보면

英國에 在호야는 國勢의 變遷이 法·曼 兩國과 其方向을 全異케호니 國王의 勢力이 獨其強大호는 時는 貴族 市民이 相合호야 國王에 抗호고 貴族의 勢力이 獨其 增長호는 時는 市民이 國王을 助호야 貴族을 抑호니 三者가 交相拮据호야 其權衡을 保호호므로써 國家의 進路와 社會의 秩序가 彼 法·曼갓치 激變을 受호야 當無호야 大陸의 諸國을 凌駕호고 長足の 發達을 致호야 君主 貴族 及 庶民의 三體로 成立호는 近世의 議院制國家를 創設호기에 至호호니라¹⁷⁾

고 하여 君主·貴族·庶民의 3계급이 서로 상호견제함으로써 정치권력의

16) 「同上書」 p. 608.

17) 「同上書」 p. 550.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나 독일은 계급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¹⁸⁾

〈政治學〉 전편을 통해서 유길준이 표시를 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흔적을 한군데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立憲君主國의 目的은 國家全體에 有機的 組織 及 能力을 付與함과 社會 各部에 適當한 權利를 配賦함에 在야 君主에게는 十分 尊榮을 與하며 貴族에게는 位格 及 權力을 與하며 平民에게는 平和 及 自由를 與하기에 不外호지라(中略) 君主 貴族 及 平民의 權衡을 始保야 歐洲大陸의 立憲君主國이 萬久安寧함을 可得호지라도¹⁹⁾

라 하여 立憲君主國의 目的은 君主에게는 충분한 尊榮을, 貴族에게는 位格과 權力을, 平民에게는 平和와 自由를 부여하여 이 세 계급간의 權衡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 계급이 어떠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여야 상호균형을 이루어 이상적인 立憲君主制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계급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君主權

〈政治學〉에 英國의 立憲君主制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千六百八十八年 大革命의 後 第十八世紀中에 英國憲法은 其發達이 甚大호니 其重要한 事項은 左와 如호니라

(第一) 英國은 世襲君主國되는 事(中略)

(第二) 立法權의 擴張(中略)

(第三) 地方自治의 發達(下略)²⁰⁾

이라 하여 英國은 1688년 명예혁명 이후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헌법

18) 유길준은 뒤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입헌군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길준이 君主權이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프리시아의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林承豹, “俞吉濬과 鄭觀應의 政治觀 比較”, p. 182 참조).

19) 〈政治學〉, 「全書」Ⅳ, p. 652.

20) 「同上書」 p. 573.

에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첫째로 英國이 世襲君主國이 된 사실을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世襲君主制가 立憲君主制의 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유길준의 번역서인 <波蘭衰亡戰史>의 다음과 같은 귀절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第一) 國王의 公選으로써 波蘭滅亡의 第一原因이라함은 何故오 夫立君과 共和政體의 得失優劣은 此에 陳說하기를 要치 아니하나 國王은 主權의 中心이며 尊嚴을 太極이라 故로 公選制 보다 世襲制가 可하니 國王을 公選하는 制는 王室의 尊嚴을 傷하고 朋黨의 乖激을 生하는 制度라고 古來 識者의 定論이 어늘(中略) 黨派가 分岐하야 互相軋轢하리니 人心을 統一치 못하는 際에 且外國은 其隙을 乘하야 賄賂로써 陷하리니 公利를 爲하야 王을 選하거 안코 私利로 因하야 選하는 故로 外國干涉의 端緒를 開하야 其恐迫과 欺瞞을 受하야 併吞하는 바 되기에 至하리 是는 國王 公選으로써 波蘭滅亡의 第一 原因이라 謂하는 바라²¹⁾

이 글에서 보면 폴란드가 멸망하게 된 첫번째 원인은 國王의 公選制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國王을 公選함으로써 王室의 尊嚴을 傷하게 했으며 또한 朋黨간에 軋轢을 격화시켜 國內의 人心을 통일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외국의 간섭까지도 받게 되어 끝내는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國論을 통일시켜 國家의 기반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첫째로 國王世襲制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西遊見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論理를 펴고 있는 것이다. 즉

人의 血氣는 私慾에 陷溺하기 最易하야 賢者를 擇하야 人君의 位에 實하야도 紛爭하는 弊가 起홀디라 血屬으로 相傳하는 法을 酌定하야 悖逆호는 者의 僥倖호는 冀望을 絶호디(中略) 父子相傳하는 世統으로 萬代의 不易하는 大法을 立하니²²⁾

라고 하여 父子相傳의 世襲君主制야말로 紛爭의 弊를 막을 수 있는 萬代

21) <波蘭衰亡戰史>, 「全書」Ⅲ, p. 310.

22) <西遊見聞>, pp. 138~9.

에 바꿀 수 없는 大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길준은 國王의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選舉制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즉 <政治學>에서

民主說이 其猛威를 逞하는 時에 當하여야는 司法局도 亦 選舉에 不因하면 不可하다야 或 其實施호는 者도 有하나 良續을 見호는 少호고 弊害를 顯호는 反多호니 (中略) 蓋 選舉法에 依호는 者는 或 情實에 依호며 或 賄賂에 陷호야 判事에 當選이 其眞是不明호는 事가 常多호며 法國에는 選舉의 方法에 不依호고 上局의 任命에 全歸호며 且 獨立호는 地位 及 權力을 有호는 故로 他國에 大勝호니라²³⁾

고 하여 예컨대 判事를 定하는 데 있어서도 選舉에 의하면 뇌물이나 情實에 치우치기 쉬워서 공정하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폐단을 유발하게 되며 때문에 任命에 의해서 定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유길준은 선거라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世襲君主制의 확립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이 世襲君主制의 확립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곧 絕對君主權의 확립과 상통하는 것은 아니다. 즉

立憲君主制의 特質은 國民의 代表者로 代議機關을 成立호야며 君主權力의 作用을 制限호는 在호니(中略) 然호나 其制限의 程度는 各國의 憲法에 必 其揆를 不호고²⁴⁾

라 하여 代議機關에 의해서 君主權을 制限하는 데에 立憲君主制의 特質이 있다는 것이다. 그 制限의 정도는 各國의 憲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立憲君主制의 성공여부는 君主權의 제한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君主權에 대해서 프랑스의 경우를 설명하고

23) <政治學>, 「全書」Ⅳ, p. 665.

24) 「同上書」, p. 564.

있는 것을 보면

千八百十四년에 發布한 路易王十八世의 憲法은(中路) 法國 君主의 大權이 英國 君主에 比한 則 頗強하되 此를 因하여 法國의 君主制가 英國에 比하여 堅固함은 不加하니²⁵⁾

라 하였듯이 프랑스의 君主權이 영국에 비하여 상당히 강하였지만 君主制는 오히려 영국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英國의 君主權은 어느 정도라고 보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英國의 立憲君主制에 在하여는 其君主는 權力이 甚微하여 殆虛器를 徒擁하며 下等社會는 無力하여 殆亦 政治 以外에 在하고 唯 貴族流의 上等 及 中等社會가 國家의 實權을 掌握하며²⁶⁾

라고 하였듯이 英國에 있어서의 君主權은 다만 虛器만을 쥐고 있을 뿐이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약하다고 보았다. 즉 君主의 권한이 강한 것 보다는 도리어 弱한 편이 立憲君主制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立憲君主制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君主가 世襲하여 존엄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君主의 권한에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2) 貴族權

〈政治學〉에서 프랑스의 立憲君主制를 論하는 내용 중에

千八百三十年에 更 其憲法을 制定하여 終身貴族의 制로써 世襲貴族을 代하고 議院의 權限을 擴張하되 然하되 其貴族의 性質은 依然 存在하되 蓋此憲法이 其後 發布한 者에 比한 則 長處가 頗多하며 且其短處는 修正하면 可히 完全한 憲法되기도 亦 甚容易하거늘 吁 彼千八百四十八年の 革命이 咄嗟間에 破裂하여 先後緩急을 慮하기와 善惡邪正을 定하기에 暇隙이 無함으로 玉石이 遂其滅絶하기에 及하니라²⁷⁾

25) 「同上書」, p. 614.

26) 「同上書」, p. 651.

고 하여 7月革命 이후 개정한 憲法에는 貴族의 性質이 의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정된 어느 헌법 보다도 좋은 것이었으며 만약에 이 헌법에 修正을 가하면 完全한 헌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立憲君主制의 憲法에는 貴族의 性格이 다분히 담겨 있어야만 良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立憲君主制下에서는 貴族들이 정치세력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其大革命은 貴族社會를 一掃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皆民主의 理論에 傾向케 할 則 當時 社會의 勢力中心이 中等以下 人民에게 在하기를 此憲法이 政權을 擧하여 彼에게 不與하고 及反 微弱한 貴族으로 하여금 法權에 基礎되게 할지라 故로 遂亦 一千八百三十年의 革命을 再起하기에 至하니라²⁷⁾

고 하여 大革命으로 貴族社會가 일소되어 세력의 중심이 中等 이하의 民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立憲君主制를 실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재차 革命이라는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政治學〉에서 보면

歐洲大陸의 立憲君主制는 英國갓치 貴族의 勢力이 強大치 못하고 君主及 平民의 權력이 甚強하여 互相軋轢하는 狀態가 有하니라²⁸⁾

라고 하였듯이 貴族의 세력이 君主나 平民보다 強大하여야만이 革命 등의 政治的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立憲君主制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길준은 귀족의 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귀족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의 실시를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立憲君主制下에서의 貴族은 어느 정도의 세력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보았는가. 영국의 예를 들어 보면

27) 「同上書」, p. 615.

28) 「同上書」, p. 614.

29) 「同上書」, p. 651.

自由의 暢進함이 英國갓트며 民權의 伸張함이 英國갓트되 尙且 財産上에 制限에 因하야 下等社會에는 政治參涉하는 權利를 不許하야 國會議員되기에 每年 三百磅 乃至 六百磅의 土地收入이 不有하면 不可하며 義勇兵士官되기에 千磅의 財産을 有하고 且四百五十磅 乃至 六百磅의 全額을 不納하면 不可하며 鄉會及 市會의 議員이나 又 行政官되기에 一定한 土地의 有함을 要하니 今일에 在하야는 土地의 有함을 要하는 條件은 廢호되 其俸給의 點에 至하야 昔時와 異한 事가 無호지라 故로 上等社會는 其勢力이 政治上에 甚大하고 中等社會는 猶 其選舉의 際에 多少勢力이 有하며 又 陪審官되는 事를 得호나 然호나 下等社會는 全혀 政治以外에 驅逐되야 政治上에 勢力이 毫無호니라³⁰⁾

교 하여 土地 등의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上等社會 즉, 貴族들이 議員, 行政官 등 政治上의 중요한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여 막강한 정치세력을 장악하고 다소의 재산을 축적한 紳士·紳商 등과 같은 中等社會는 선거권 등에 의한 정치참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재산이 없는 下等社會는 政治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부여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길준이 생각한 이상적인 입헌군주제는 귀족들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유길준이 土地均分論을 거부하면서 양반지주층의 富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도 이와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¹⁾

(3) 民 權

立憲君主制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民의 정치참여를 전제로 이룩되는 것이었다. 이들의 정치참여란 선거권을 부여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30) 「同上書」, p. 583.

31) 유길준이 近代化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富의 축적으로 인한 국가재정확립을 염두에 두고 지주층의 부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金鳳烈, “俞吉濬의 開化思想”, p. 108 참조).

그러면 民이 國政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유길준이 번역한 <波蘭衰亡戰史>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크게 참조될 수 있을 것 같다.

(第三) 人民의 政權이 無함으로 波蘭滅亡의 第三原因이라 함은 何故오 波蘭國은 元來 國王公選호는 制라 國會의 設함이 有호나 其일은바 公選은 貴族이 公選호는 主義니 人民은 與知호기 能치 못호고 且國會라 稱도 貴族의 國會니 人民은 參與호기 能치 못호지라 是故로 人民은 國家의 念이 無호야 他人의 物갓치 視호고(中略) 凡文事 武備 內治 外交에 一臂의 力이라도 添코져호는 者는 皆國家의 枝葉되호는 貴族이오 其根柢本幹되호는 人民은 茫然不知호는 故로 國家의 基礎가 自然薄弱호거늘 豺獠虎豺狼 갓튼 敵을 當코져호니 엇지 其政略이 敏捷호고 軍事가 統合호리오³²⁾

이 글에서 보면 民이 政治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國家에 대한 관심은 民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나라를 마치 남의 나라 보듯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히 民은 國家의 정치, 사회 등 모든 諸般事에 대해서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서 국가의 기초는 박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他國의 침략을 받아도 민첩하고 통일된 정책을 가지고 대처하기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民에게 애국심 등 나라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관한 지식 등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는 民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비로소 나라의 기틀이 굳건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이 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民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國民의 全數가 參政權을 有호는 者는 稱호야 自由國體라 云호나 然호나 純粹호는 自由國體는 理想上에 在호는 譯이오 事實上에 存在치 못호는 者니³³⁾

32) <波蘭衰亡戰史>, 「全書」Ⅲ, p. 315.

33) <政治學>, 「全書」Ⅳ, p. 502.

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參政權이 주어지는 國體는 理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어떠한 국가든지 政治圈 밖에 존재하는 民은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모든 國民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人民의 知識이 不足한 國은 卒然히 其人民에게 國政參涉하는 權을 許함이 不可한 者라 萬若 不學한 人民이 學問의 先修함은 無하고 他邦의 善美한 政體를 欲效하면 國中에 大亂의 萌을 播함인 故로 當路한 君子는 其人民을 教育해야 國政參與하는 知識이 有한 然後에 此政體를 議論함이 如何하니 此政體가 有한 然後에 其國의 開化하기를 冀圖함이다³⁴⁾

고 하였듯이 정치적 식견이 없는 무지한 백성에게 조차 참정권을 허락하게 되면 일대 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 대한 教育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프랑스가 입증해주고 있다고 한다. 즉

彼帝가 國民의 帝權의 從出하는 淵源됨을 既認하며 且法國人民은 階級을 不論하고 何人이든지 榮位에 得進하는 門路를 開어야신 則若 拿破崙帝朝가 平穩하게 其社稷을 永保하였시면 法國이 漸次 發達해야 其正한 立憲君主國되기도 亦可 希待할지어늘 可惜하다³⁵⁾

고 하여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이면 누구에게든지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門路를 개방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 프랑스가 입헌군주국이 될 수도 있었던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길준은 입헌군주제의 확립을 위해서 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즉 그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民權 확보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유

34) 〈西遊見聞〉, p. 512.

35) 〈政治學〉, 「全書」Ⅳ, p. 613.

길준이 백성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행에 옮긴 일 등은 立憲君主制로 개혁할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民權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일면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유길준이 생각한 입헌군주제란

蓋中世의 階級制와 近世의 代議制와의 區別은 代議制가 階級의 存在함을 不容함에 不在하고 唯 國民의 趨向을 有함에 在하니³⁶⁾

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階級制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西遊見聞〉에서도 역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各國中에 英吉利政體가 最佳하고 極備한 者라 世界의 第一이라 稱하니 賦稅와 政令을 議論하는 大臣을 人民의 薦擧로 進하는 者는 國人の 共和하는 意思가 存함이오 司法行政及 議政大臣이 貴族을 多用하는 者는 貴族의 主掌하는 風習이 有함이오 國中에 行用하는 典章과 法度를 大小업시 人君의 許施아니면 決斷하기 不能한 者는 君主의 擅斷과 命令하는 體貌를 保후이라³⁷⁾

고 하여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君主·貴族·庶民 등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專制君主制·貴族制·共和制를 모두 수렴한 듯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⁸⁾

입헌군주제를 신분제급 위에서 파악하고 있었던만큼 유길준에게는 신분제급을 철저히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즉 그의 〈勞動夜學讀本〉에서

사람이 서로 信이 잇서 實踐이 等分잇십과 上下가 차례 잇십을 이같은 社會의 倫紀니라³⁹⁾

36) 「同上書」, p. 639.

37) 〈西遊見聞〉, p. 151.

38)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貴族의 存在가 沒覺된 立憲君主制下에서의 君主權과 民權과의 二重의인 관계만을 주목하고 있었다.

고 하여 인간에게 貴賤의 구별이 있는 것과 上下의 질서가 있음은 社會의 윤리 기강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政治學>에서도

近世의 國家는 國法上 國民의 存在를 認하고 等族의 存在를 不認하나 然거나 事實上으로는 幾多한 等族이 國內에 儼立하야 國政上에 至하야 至大한 關係를 有함을 免치 못하느니라³⁹⁾

라 하여 비록 法 앞에서는 모든 國民이 平等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실 상으로는 신분제층의 구별이 여전히 존립하고 특히 政治上으로는 지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길준의 신분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입헌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의 정치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地方自治制論

유길준은 地方自治制의 發達이 입헌군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政治學>에 보면

抑 國家의 生活은 樹木의 生活과 如하니 議院政治는 國家의 花實이요 地方自治는 國家의 根本이라 花實의 豐饒함은 根本의 牢固함에 因함갓치 議院政治의 得行함은 地方自治의 整理함에 依하느니 今에 英國처럼 地方自治體의 基礎는 堅固치 못하고 唯 其議院政治를 模倣코져 하는 者는 其根本의 堅脆를 不省하고 唯其花實의 豐富를 望함과 無異홀지라 其目的을 達함이 抑亦 難홀진저⁴⁰⁾

라 하여 議院政治가 즉 花實이라면 地方自治는 곧 뿌리라는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따라서 꽃과 열매도 건실할 수 없듯이 地方自治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비록 立憲君主制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룩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地方自治는 立憲

39) <勞勛夜學讀本>, 「全書」Ⅱ, p. 268.

40) <政治學>, 「全書」Ⅳ, p. 465.

41) 「同上書」, p. 584.

君主制 실시에 선행되어 발달되어야 할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당연히 지방자치의 모범도 역시 영국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다. 즉

中央集權에 趨하지 아니할 則 地方分權에 歸해야 中外 平均한 權衡으로 國家의 正鵠을 得호는 者는 殆無호디 唯 英國은 諸侯가 勝利를 得호야도 其支離滅裂함이 日耳曼 伊太利 갓기에 至호지 아니호고 國王이 專橫호나 諸侯의 喪亡호는 事가 法蘭西 갓치 甚호기에 至호지 아니호야 中外가 相均호므로 國家의 正鵠을 不設호니라⁴²⁾

고 하여 英國이 다른 歐洲의 여러 나라와는 다르게 中央集權에 또는 地方分權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영국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英國에 地方自治의 發達은 大陸諸國에는 其比를 絶不見호 바이니 歐洲大陸의 地方政務는 率階稍前에 在호야는 封建諸侯에 屬호고 後에는 中央政府의 派遣호는 官吏의 手에 不臨호는 者가 無호거늘 英國에는 封建諸侯가 그 勢力을 失호 以來로는 地方豪族이 그 地方의 政務를 執호야 大陸諸國 갓치 有給官吏호는 者가 絶無호니 是以로 凡一地方에 關호는 司法事務 警察事務 及 他瓊少호는 懲罰事務等項이 階諸地方에 住居호는 豪族中으로서 選擇호는 名譽職名譽職은 但其名譽를 爲호야의 辦理 俸給없시 奉職호는 義務라에 臨호는 則 國帑의 糜費가 無호는 外에 英國의 地方自治는 實 又 其他方人民에게 政務教授호는 一種 政治學校된다 云호도 過言아니라⁴³⁾

고 하여 歐洲의 여러 나라에서 봉건제후가 무너지면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추구한데 반하여 영국은 그 지방의 豪族에게 名譽職을 주어 그 지방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國庫의 낭비도 없앨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政治學校로서의 구실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길준은 지방자치제의 발달이 입헌군주제에 공헌할 수 있는 것

42) 「同上書」, pp. 551~2.

43) 「同上書」, p. 580.

은 지방민에 대한 정치실습의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방단체를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여 놓은 것을 보면

凡健全한 政治思想의 發達은 地方團體 같은 小範圍를 從야 來하는 者가 多하며 又 共同心 自警心 及 獨立心 같은 政治的 道德도 亦先 是類의 小範圍를 從야 發生하며 且生長하는 者가 多함일지니라⁴⁴⁾

고 하여 건전한 정치사상의 발달은 바로 소규모의 지방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共同心·自警心·獨立心 등 정치도덕도 조장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통한 정치교육은 그 대상이 역시 입헌군주제의 핵심세력이어야 된다고 믿었던 귀족이었던 것 같다. 예컨대 영국에서

貴族의 公子는 其爵位承襲하기 以前에는 概衆院議員되며 或 地方名譽職이며 政務에 練習으로 其常例를 作하는 故로 大陸諸國의 貴族과는 其品質을 大異케 하며 그 地位가 亦甚 堅牢하니라⁴⁵⁾

고 하여 英國의 貴族들이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달리 정치적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일찍부터 귀족들의 자제들에게 정치훈련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귀족자제에 대한 정치훈련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地方自治制가 지방의 여러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귀족들을 위한 정치학교 구실을 함으로써 입헌군주제의 뿌리구실을 한다고 보았던 것 같다. 따라서 입헌군주제의 선행조건으로서 지방자치제의 발달을 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유길준으로서는 국내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가 일본망명생활을 청산한 직후인 1908년에 창립한 漢城府民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의지가 구

44) 「同上書」, p. 439.

45) 「同上書」, p. 585.

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漢城府民會擬立理由書〉에 〈政治學〉에서 地方自治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생각된다. 즉 유길준은 입헌군주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漢城府民會는 창립하고자 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자 추구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俞吉潑이 일본에서 11년간의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번역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政治學〉을 중심으로 기타 그의 저술 등을 참조하면서 그가 政體 중에서 가장 이상형으로 표방한 立憲君主制에 대해서 그 일면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에서 얻은 것을 요약하여 맺는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유길준은 영국과 같은 이상적인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君主·貴族·庶民 등의 신분계층을 그대로 존립시키면서 이들을 조화있게 정치권 안으로 수렴시키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즉 君主는 최고의 위치에서 위엄을 지킬 수 있는 世襲君主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의 정치권한에는 상당한 제한을 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귀족은 정치상 모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중심세력으로서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혁명 등과 같은 혼란없이 안정된 정치를 이룩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민의 정치참여가 있어야만 비로써 입헌군주제가 실시될 수 있다고 民權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즉 民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산과 지식을 갖춘 中等社會에는 選舉權 등 참정권을 부여하여야만이 이들의 정치지식을 높이고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근본이 굳건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지한 下等の 國民에게는 결코 정치에 참여시키면 안되는 정치권밖의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면 그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길준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견해는 철저한 신분제도의 타파, 또는 민권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길준은 입헌군주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地方自治制의 발달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귀족의 정치훈련장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의 중심세력인 귀족정치가들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는 입헌군주제의 뿌리가 된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여기고 있던 입헌군주제를 국내에서 성취하고자 회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양반지주층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든지, 興土團 등을 조직하여 교육 등 국민을 개발하기 위한 계몽사업에 노력을 기울인 일, 또는 漢城府民會를 창립하여 地方自治制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사실은 그가 국내에서 입헌군주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